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필리핀

두주

1. 이 양허표는 5개 절로 구성되며, 1개 절은 모든 당사자에 적용 가능하고, 4개 절은 각각 호주와 뉴질랜드, 중국, 일본 그리고 한국의 특정 세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.
2. 이 양허표에 언급된 아세안 통합관세품목분류표(AHTN) 코드는 2012년도 필리핀 국가품목분류표에 기초한다.
3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
4. 이 양허표의 관세 철폐의 비선형 진행은 검토 대상이며, 그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내에 완료된다. 검토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모든 관련 세번의 선형 진행은 그러한 검토의 완료 후 3년 내에 개시된다.